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 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간접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리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영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 회비안내

####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시적 건축사, 거시적 건축사

Micro Architects,  
Macro Architects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건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건축사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시각을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느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도 전부 그럴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건축계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편집국장으로 지난 2년 동안 내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또는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사설, 정책 제안 기사, 영화 이야기 등을 통해 누차 발언해왔다. 다른 건축사들도 여러 문제들을 제기했다. 그중에는 흥미롭고 긍정적인 글들도 많았지만 모순된 내용도 상당했다. 개인적인 상황을 시스템으로 혼동하는 내용 또한 많았다. 그중 하나가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그 전제는 건축사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인데, 현실에서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사를 키워내는 학계, 건축사 산업과 관련된 집단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대한건축사협회와 몇몇 인사들만 열심히 말할 뿐이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크진 않다. 건

축사의 수와 정치적 권익 향상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의무가입 역시 마찬가지다. 의무가입의 기본

목표와 가치는 '건축사의 윤리 강화'를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데 있

다. 시장 질서 교란을 예방하고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여러 상황들은 이



려한 윤리 강화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을 권력 게임으로 바

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취할지 갈등

하고 고민하는 현상도 심심찮게 관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사 설계업 허용을 추진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

또한 놀랍다. 건설과 건축을 동일 산업으로 바라보고 상호 간의 차이를 무시한

채 독점과 규제로만 이해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 행위가 독점일까? 판사의 판

결 행위가 독점일까? 독점이 아니라 전문가 본연의 업무다. 건설과 건축의 규

제 칸막이를 운운하는 사고의 기저엔 건축사 업무가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단 뜻이다.

그렇다면 굳이 5년제의 건축대학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또 국가건축

정책위원회라는 조직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왜 만든 걸까? '설계의도 구현'

이나 '감리 강화' 같은 법·제도가 존재한단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이 법·제도들

은 건설과 건축이 다름을 증명하는 동시에 각자 독립적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물론 이들은 건축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책이긴 하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건축사보와 건축사들의 태도다. 건설사 설계업

허용 이야기가 나오니 고용과 경제적 보장을 근거로 삼아 긍정적 태도를 보인

다. 지면관계 상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진 않겠다. 다만 현실을 제대로 이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강조하고 싶다. 그런 뒤에 함께 소리치고,

함께 연대하자. 우리 건축사들의 권리와 권익은 다른 누군가가 보장해주지 않

는다. 스스로 노력해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결실은 우리에게 권리와 영역이,

건축대학을 다니는 미래의 건축사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다.